

1. 제안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명문장수기업 신청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
(안 제25조의3 신설)
- 나.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현행화(안 제25조의4)
- 다. 개업일 기준 마련(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규칙 조항 및 제출서류 현행화 (안 별지 제2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각 부처와 합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심의)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5조의3을 제25조의4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수정하고,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
명서”를 “국세납세증명서”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로 하고, “라. 국세납세증명서”를 신설한다.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5를 제25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사업자등록일”을 “개업일(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종코드(세분류)”를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항”을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로 하며,

첨부서류에서 법인기업인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수정하고,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를 “국세납세증명서”로 수정하고, 개인기업인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은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등”으로 수정하고, “4. 국세납세증명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 신설 ></u>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u>재무제표</u>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심의)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5조의4 ----- ----- ----- ----- ----- ----- -----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u>표준재무제표</u> <u>증명</u>

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
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 나. (생략)

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국민
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 신 설 >

② (생 략)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
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
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라.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마. 국세납세증명서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라. 국세납세증명서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 -----

1. ~ 2.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5</u>(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u>제25조의6</u> ----- ----- ----- ----- ----- ----- -----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7.1>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기업구분(법인기업/개인기업)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사업자등록증 기준) <수정>
	법인등록번호	최근결산일자
	사업장 주소	
	주업종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신설> 세분류)
담당자정보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수정>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귀중

	법인기업	개인기업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정 > 1부 4.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정 > 5. 국세납세증명서 <수정>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정 > 4. 국세납세증명서 < 신설 >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